

지도교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재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교수) 지도교수라 함은 학생의 학업, 학생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자로서, 배정된 지도학생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8.2.27.개정)

제3조(자격) 지도교수는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2013.12.23.개정)

제4조(임명 및 기간) 지도교수의 임명은 매년 2월에 학생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018.2.27.개정)

제5조(임무) 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담당한다.

1. 학사전반에 관한 지도
2. 생활지도 및 상담
3. 휴학, 복학, 진로상담
4. 봉사활동 등 교내·외 학생활동의 지도·감독
5. 신앙생활 지도
6. 징계학생 지도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상담기록 입력) 지도교수는 학생들과의 상담 내용을 학생역량개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8.2.27.개정)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